



미얀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6월 3일 미얀마 지적재산권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CCIP)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CCIP는 미얀마 정부 최초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구성된 신설 조직으로 헨리 반 티오 제2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 과학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 지적재산권중앙위원회 의장



▲ CCIP 첫 회의 장면

CCIP 구성 및 역할

정부는 2019년 제정된 '산업디자인법', '상표법과 '특허법',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라 CCIP를 구성한다고 밝히며 CCIP의 위원 구성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CCIP는 제2 부통령(위원장), 상무부 장관(부위원장), 상무부 차관(사무총장), 기획재정 산업부 차관, 정보부 차관, 농축산관개부 차관, 교육부 차관, 관련 전문가 및 NGO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되었다.

CCFI의 주요 역할은 **첫째**,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감독 **둘째**, 경제개발과 외국인 투자촉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정착 **셋째**,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시스템 조성 **넷째**, 지적재산권 분야 발전을 위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증진 **다섯째**,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정부 업무 등이다.

또한 CCIP는 산하에 미얀마 지적재산권 신청 및 등록 업무를 총괄 관리할 미얀마 지적재산권 관리국(Myanma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ency, MIPRA)도 설립했다.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협정과 미얀마 준수 의무

미얀마는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됐고 1997년 7월 3일 ASEAN에 가입했으며 2001년 5월 15일 176번째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국가가 됐다. 미얀마는 WTO 회원국이기에 때문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준수해야하고 ASEAN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지식재산권 협력 기본 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도 준수해야 한다. 특히 TRIPS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관련 협정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므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9년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제정 이전 미얀마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은 유명무실했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1908년에 제정된 ‘등록법(Registration Act)’, 1914년에 제정된 ‘저작권법(Copyright Act)’, 1946년에 제정된 ‘특허 디자인법(Myanmar Patents and Designs)’ 등 국제 기준에 한참 뒤떨어진 법규밖에 없다는 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투자 방해요소로 거론될 정도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이 속속 제정되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지적재산권, 특히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만달레이의 한 개인이 2015년 신문에 게재한 스타벅스 상표권에 대한 ‘주의공고문(Cautionary Notice)’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되며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주의공고문은 스타벅스 상표를 부착한 커피류 및 식음료가 미얀마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등록자 개인이 소유한 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게재 당시에는 국민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던 이 공고가 상표법이 통과되며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다시 회자되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담당 변호사까지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

상표법 주요 내용

상표법은 선출원주의 채택, 전담 법정 신설, 상표의 우선권 인정 등 국제 상표권 등록 관리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계자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표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사용주의에서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미 등록돼 사용되고 있는 상표라도 자동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등록 상표권 소유권자도 재등록을 해야만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CCIP와 지적재산권 분쟁 전문 법정 및 미얀마 지적 재산권청(MIPO) 신설 등 전담 기구가 설치된다.

셋째, 상표우선권 인정이다. 파리협약이나 WTO에 상표를 이미 등록한 상표권 소유자가 다른 회원국에 상표를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얀마에 상표를 신청할 경우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상표법 51항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상표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유명상표’를 정의하고 이를 위조한 경우 법적 제재 조치

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명상표 인정 절차나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포춘 세계 500대 기업’ 상표 등이 유명상표로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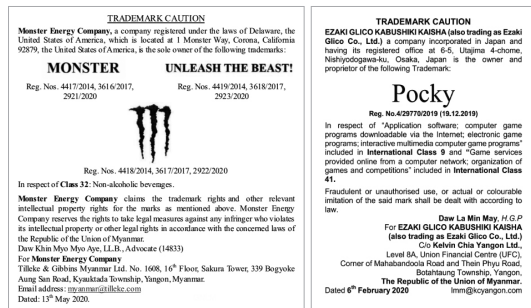
다섯째, 상표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상표권 소유자는 미얀마 관세청에 상표권 침해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해당 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

여섯째, 차별성이 결여되거나 미얀마의 풍위 및 문화, 도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지리적 표시도 등록 가능하며 상표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한다.

상표법 관련 주의 사항

상표법이 발효되면 새로운 상표 등록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다음과 같이 현행 등록 시스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현행 상표등록법(미얀마 등록법, 1918)에 따르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는 양곤이나 만달레이의 등기소에 상표권 소유권(Declaration of Trademark Ownership, 이하 DTO)을 등록해야 한다. 상표마다 각각의 DTO를 등록해야하며 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4~6주 내 등록이 완료된다.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의 소유권 공지를 위해 신문에 다음과 같은 주의공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신문 내 게재된 상표권 주의공고문

Key Point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중 하나는 선출원주의 도입으로 인해 같은 날 접수되는 다수의 상표권 신청 간 분쟁이나 기존 등록 상표와 신규 등록 상표 간 분쟁 조정 방안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표법 발효 이전에 먼저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CCIP 구성 및 활동 시작으로 인해 정부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의 조기 시행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상표법 시행을 위해서는 상표등록사무소 신설 및 구체적인 등록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정비도 필수적이고 이러한 제도적 정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새로운 상표법 체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